

투자권유준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 정 2018.01.10	제 정 2019.12.30 개 정 2026.07.29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4호, 제5조, 제13조제1항, 제18조 및 제20조는 전문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때에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u>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u>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u>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u>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u>신탁계약(관리신탁 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u>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u>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에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u>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u> 3.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4. “취약한 금융소비자”란 고령자(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의 금융취약계층을 말한다. (신설)	(삭제) 4.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u>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u>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u>일반투자자</u>로 전환할 수 있는 <u>전문투자자</u>가 <u>일반투자자</u>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u>일반투자자</u>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u>전문투자자</u>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u>전문투자자</u>로 본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u>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u>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u>일반금융소비자</u>로 전환할 수 있는 <u>전문금융소비자</u>가 <u>일반금융소비자</u>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u>일반금융소비자</u>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u>전문금융소비자</u>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u>전문금융소비자</u>로 본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u>않는 경우</u>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2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3항(적합성원칙)에 따른 의무를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투자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략)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u>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u>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행과 같음)

(신설)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등을 판매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금융투자회사의 판매계약(자문결합계약)을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파생상품등에 대한 적정성원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 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③ 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스코어링 기준[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그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별지 제2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취약한 금융소비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를사를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확인 받아야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상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적용이 배제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과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를 따른다. (삭제) (삭제)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36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알린 후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투자자의 경우에는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표 1]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이하 생략)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을 알리고 투자 권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표 2]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신설)

⑤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⑥ 투자자가 취약한 금융소비자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의 적용이 배제됨을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이하 현행과 같음)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참고1]의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알리고 해당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고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임직원은 개인인 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 1] 기준과 함께 투자자의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 등을 추가로 고려한 [표 3]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신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별지 제6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삭제)

경우 [표 4]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u> 2. (생략)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u>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생략) 다. (생략) (신설) 5.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신설) (신설)	제12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u> 2. (현행과 같음)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u>가목과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 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u>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u>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u> 나.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u>장외파생상품</u>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삭제)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u>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u> (1) <u>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u> (2) <u>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u> (삭제) 5. <u>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u> 6. <u>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u>

		<u>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u>
	(신설)	<u>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u>
	(신설)	<u>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u>
	(신설)	<u>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u>
	(신설)	<u>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u>
	(신설)	<u>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u>
6. (생략)		<u>12. (현행과 같음)</u>
	(신설)	<u>13. 금소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정보를 파악하거나 확인을 받을 때에 투자자가 특정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u>
	(신설)	<u>14. 투자자와 대면하여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한 후 투자자로부터 요청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투자자를 대신하여 비대면 방식의 투자성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u>
		<u>② ~ ③ (현행과 같음)</u>
② ~ ③ (생략)		<u>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u>
	(신설)	<u>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u>
		<u>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u>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신설)	제13조(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을 회사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설명의무) ① (생략) (신설) (신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u>투자자의 투자경험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등 투자자의 이해수준을</u>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u>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 1. <u>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u>	제14조(설명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2. 임직원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2.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u>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 측면을</u>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임직원등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u>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u>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

2. <u>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 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u> (신설) (신설) ⑤ (생략) (신설) ⑥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u>연락처 상담센터</u>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u>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u>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등은 <u>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u>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현행과 같음) ⑨ 임직원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u>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u>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u>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u> 2. <u>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u> 3. <u>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목표 환위험 헤지 비율</u> 4. <u>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u>	(삭제)

<u>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u> <u>5.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 : 20%, 40%, 60%) 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u> <u>② 임직원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신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 : 20%, 40%, 60%) 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표 2]와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 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 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③ ~ ④ (생략)	제16조(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 ①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 및 [별지 제3호]와 같이 분류한다. ②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신설)	제17조의2(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금소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 2. (금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 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⑥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신설)	제17조의3(위법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u>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u>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법 제103조제3항</u>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법 제103조제3항(신노후 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u>에 따라 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2. (생략)	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19조(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 유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 2. (생략)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u>주요경력</u> 4. ~ 7. (생략) 1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 대상 기간 13. (생략) ② (생략) 1. ~ 5. (생략)	제19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u>주요경력(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u> 4. ~ 7. (현행과 같음) 8.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 대상 기간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제21조(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제21조(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u>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u> 2. 임직원등은 제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표 1]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u>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위험등급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신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u>투자일임계약 상품의</u>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u>분산투자에 따른 제한이 없어</u>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u>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생략)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u>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1:1 로만 운영하는 경우(특정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산배분유형군이나 세부자산배분유형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게 운용하여야 한다.</u> 4. <u>회사는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u>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u>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u>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u>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제1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u>투자일임재산의</u>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현행과 같음)
(신설)	<u>제22조(실명 확인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u> 1. <u>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제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u> 2. <u>임직원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의하여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u>
(신설)	<u>제23조(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등)</u> 회사 및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24조(전문금융소비자에 대한 특칙)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자가 정한 별도의 가이드라인 또는 운용지침에 따라 투자자유형을 분류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 회사가 투자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분류한다.
(신설)	제25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자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 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준칙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